

● 제276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1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검 토 보 고 서

2017. 9. 4.

운 영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1913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창수 의원(찬성자 문형주 의원 외 9명)
- 나. 제안일 : 2017. 6. 16.
- 다. 회부일 : 2017. 6. 19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, 복잡다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상존하고 있는 현대 행정의 특성상 제출된 의안의 충분한 검토 및 심의에 시간적 제약이 뒤따르고 있음.
- 따라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20일전까지로 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2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함(안 제18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)가 의결할 의안에 대해 긴급을 요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제출시기를 조정(회기시작 10일전 ⇒ 20일전)해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의안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임.

2 의안의 제출·발의 시기 조정(안 제18조제3항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에 따르면, ‘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’ 라고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각 광역의회에서는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 시기, 처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, 특히 의안의 제출 시기도 연간 회기 일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(붙임1 참조).

<표 1> 광역의회별 의안 제출 또는 상정 시기(2017년 8월 기준)

| 구 분 | 시·도의회명 | 갯수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5일 전 | 전남 | 1 |
| 7일 전 | 광주, 울산, 강원, 충북, 전북 | 5 |
| 10일 전 |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세종, 경기, 충남, 경북, 제주 | 9 |
| 14일 전 | 대전 | 1 |
| 15일 전 | 경남 | 1 |

- 우리 의회는 「회의규칙」에서 의안의 제출 시기를 원칙적으로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로 정하고 있고, 긴급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(2003년 제18조③ 신설).
- 2017년 현재 의회에서 처리한 의안 238건을 살펴보면, 164건(68.9%)은 회의규칙에서 정한 회기 시작 10일 이전에 제출되었고, 나머지 74건(31.1%)은 10일이 경과된 채 제출되어 처리되었음.

<표 2> 2017년 처리안건의 발의자별 의안 제출일

(단위 : 건)

| 구 분 | 회기시작일 이후 | 회기시작일 ~ 9일전 | 회기시작10일전 ~ 14일전 | 회기시작15일전 이후 | 계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
| 교육감 | - | - | 19 | - | 19 |
| 시 장 | - | 4 ¹⁾ | 73 | - | 77 |
| 의 원 | 16 | 54 | 49 | 23 | 142 |
| 계 | 16 | 58 | 141 | 23 | 238 |

- 후자가 동 조항 단서에 의한 ‘긴급을 요하는 경우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, 상당수의 안건이 회기 시작 10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제출됨에 따라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어 왔음.
- 특히 ‘제정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’, ‘공유재산 관리계획안’과 같이 단일 안건의 형식일지라도 실제로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검토 내용들이 포함된 경우 충분한 안건 검토와 심의에 시간적 제약이 뒤따르고 있음.
- 이에 본 개정안은 의안의 제출 시기를 회기 시작 전 10일에서 20일로

1) ①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변경안, ② 2017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, ③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, ④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(대행)동의안

조정해 의안 검토와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의안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,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.

<표 3>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<u>10일전</u>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④ (생략) |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<u>20일전</u>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④ (현행과 같음) |

- 다만, 의안의 제출 시기와 같은 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정은 의회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²⁾으로 의회 구성원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.
- 또한 의안의 제출 시기와 조례안의 상정 시기³⁾(회의규칙 제54조의2)에 관한 단서 조항을 보다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2) 이와 관련해 「국회법」 제59조는 의안의 상정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.

제59조(의안의 상정시기) 위원회는 의안(예산안,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일부개정법률안: 15일
2. 제정법률안,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: 20일
3. 체계·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: 5일
4. 법률안 외의 의안: 20일

3) **제54조의2(조례안의 상정시기)**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,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한편,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6년 행정자치부 「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」에서 의안 제출 시기는 회기 시작 7일전으로 제안하고 있고, 대전(14일)과 경남(15일)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의회도 10일 이하의 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타 시·도의회 입법례와 행자부권고안을 고려해 의안 제출시기를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함(붙임2 참조).

3 종합 의견

- 이상을 종합하면, 본 개정안은 의안 제출 시기를 10일 앞당겨(회기 시작 10일 전 ⇒ 20일 전) 보다 효율적인 의안 검토와 심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의안 심의기능 강화와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하는 등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, 타 시·도의회의 입법례, 국회 사례, 의회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기별 의안의 제출 또는 상정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의회 차원의 자율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.

붙임 1**광역의회별 의안 제출 또는 상정 시기**

| 구 분 | 의안 제출 또는 상정 시기 | 비고 |
|-----|---|-------------|
| 서 울 | 회기시작 10일 전 | 회의규칙 제18조 |
| 부 산 | 회기시작 10일 전(업무보고서는 5일) | 회의규칙 제20조 |
| 대 구 | 회기 개시 10일 전 | 회의규칙 제20조 |
| 인 천 |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안건은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음. | 회의규칙 제13조 |
| 광 주 | 회기시작 7일 전 | 회의규칙 제20조 |
| 대 전 |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4일(업무보고서는 7일) 전,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0일 전 | 회의규칙 제20조 |
| 울 산 | 개의 7일 전 | 회의규칙 제20조 |
| 세 종 |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이를 상정할 수 있음. | 회의규칙 제63조 |
| 경 기 | 회기개시 10일 전 | 회의규칙 제25조 |
| 강 원 | 집회일 7일 전 | 회의규칙 제20조 |
| 충 북 | 회기 개시일 7일 전(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한다) | 회의규칙 제20조 |
| 충 남 | 회기개시일전 10일(업무보고서는 7일) | 회의규칙 제13조 |
| 전 북 | 회기시작 7일 전 | 회의규칙 제12조 |
| 전 남 | 회기개시일 전 5일 | 회의규칙 제20조의2 |
| 경 북 | 집회일 10일 전 | 회의규칙 제20조의2 |
| 경 남 | 본회의 개의 15일 전 | 회의규칙 제20조 |
| 제 주 | 회기 개시 10일 전 | 회의규칙 제22조 |

서울시 검토의견 : 현행(회기시작 10일전까지) 유지

- 시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을 위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, 공유재산 심의회 등의 사전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, 안건 제출기한이 ‘회기시작 20일전까지’로 당겨질 경우 연간 예정된 사전절차 일정도 변경되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있음
- 현재 대다수의 시·도 의회에서 10일 이하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고, 행자부 회의규칙 권고안에서도 ‘회기시작 7일전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시도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현행 규정 유지를 건의드립니다.

 서울시교육청 검토의견 : 현행 규칙의 유지

-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안 제출 시기를 1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동감하나,
- 「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(행자부,2016)」에서 의안 제출 시기를 회기시작 7일전으로 규정하고 있고
- 17개 시·도의회 회의규칙 중 14개 시·도가 제출 시기를 10일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칙의 유지를 건의함